

2025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『2025년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지원사업』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7월 23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유의사항 -

1.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여야 하며, 주관연구개발기관(공급기업)과 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(도입기업)의 참여가 필수입니다.

| 구 분 | | 지원 대상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주관연구 개발기관 | 공급기업(필수) | 제조현장 산업안전 관련 진단·점검·예방·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| 컨소 시엄 <필수> |
| 공동연구 개발기관 | ①도입기업(필수) ②도입기업(필수) | 제조현장 산업안전 관련 진단·점검·예방·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-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<u>50인 미만</u> 제조 중소기업 | |
| 위탁연구개발기관(선택) | |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(대학, 연구소, 기업 등) | |

* 컨소시엄 : 공급기업(주관) + 도입기업(공동, 2개사 이상 필수 참여) + 대학·연구기관 등(선택)

2. 신청자격 서류,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(수정)제출이 불가하오니, 세부과제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부사업 | 공고 | 신청·접수 | 선정평가 | 협약체결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R&D | 7월 23일 | 8월 8일 ~ 8월 22일 | 9월 | 10월 |

3.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(18시) 내 신청·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 소개

동 사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 R&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2. 지원내용

- (지원목적)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기반 산재예방 R&D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 및 예방체계 확립
- (지원규모) '25년 16.5억원 내외 (20개 과제 내외)
 - *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(지원분야) 4대 지원분야 内 자유공모 <별첨1> 참고
- (지원조건) 최대 2년, 6.6억원 이내

| 지원형태 |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|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| 지원방식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컨소시엄형 | 최대 2년, 6.6억 이내 | 75% 이내 | 자유공모 (품목지정) |

* 총 연구개발비 : 정부지원연구개발비 + 기관부담연구개발비

**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기관(중소기업) 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,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<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 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| 기관부담연구개발비 | | | 총 연구개발비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현금 | 현물 | 소계 | | |
| 1차년도 ('25.10.1~'25.12.31) | 금액 (비율) | 82.5 (75%) | 3 (2.4%) | 24.5 (22.3%) | 27.5 (25%) | 110 (100%) |
| 2차년도 ('26.1.1~'26.12.31) | 금액 (비율) | 330 (75%) | 11 (2.5%) | 99 (22.5%) | 110 (25%) | 440 (100%) |
| 3차년도 ('27.1.1~'27.9.30) | 금액 (비율) | 247.5 (75%) | 8.5 (2.6%) | 74 (22.4%) | 82.5 (25%) | 330 (100%) |
| 합 계 | | 660 | 22.5 | 197.5 | 220 | 880 |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

*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, 개발방법,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

**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(2025.10.1.)로부터 2025.12.31.까지로 설정

| 구 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개발기간 | '25.10.1.~'25.12.31. (3개월) | '26.1.1.~'26.12.31. (12개월) | '27.1.1.~'27.9.30. (9개월) |

- 선정평가 결과, 정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

*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

-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개발기간으로 신청

(필수적 성과목표) 2개 지표 중 1개 지표 이상 필수 반영 필요

| 특화 성능지표 | 전체 성능지표 중 차지 비중 [수정불가]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고용노동부,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(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) 품목 신규 등록 | 15% |
| · 도입기업 외 1개 기업 이상 기술개발 결과물(산업재해 예방 장비 또는 솔루션) 보급 | 15% |

3. 신청자격 등
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- (공동연구개발기관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,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
 - 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
 - ② 공장등록증명서를 보유한 제조기업
- (위탁연구개발기관)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(기업, 대학, 연구소 등)
- (컨소시엄 구성) 주관연구개발기관(공급기업)과 최소 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(도입기업)으로 필수 구성
 - *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(공급기업)의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은 경우 컨소시엄 참여가능(컨소시엄 확약서 필수 제출)

< 컨소시엄 구성 예시 >

| 신청가능(O) | | | | 신청가능(O)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주관연구 개발기관 | 공동연구 개발기관 | 공동연구 개발기관 | 공동연구 개발기관 | 주관연구 개발기관 | 공동연구 개발기관 | 공동연구 개발기관 | 위탁연구 개발기관 |
| A기업 [공급기업] | B기업 [도입기업] | C기업 [도입기업] | D기업 [도입기업] | A기업 [공급기업] | B기업 [도입기업] | C기업 [도입기업] | D대학 [비영리] |
| 신청불가(X) | | | | 신청불가(X) | | | |
| 주관연구 개발기관 | 공동연구 개발기관 | 위탁연구 개발기관 | | 주관연구 개발기관 | 공동연구 개발기관 | 위탁연구 개발기관 | |
| A기업 [공급기업] | B기업 [도입기업] | C대학 [비영리] | | A기업 [공급기업] | B기업 [도입기업] | C기업 [중소기업] | |

- (신청자격의 검토·확인) 참여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부채비율,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* 신청자격 검토(확인) 결과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-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·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,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(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) 신청·지원제외 세부사항은 <별첨2> 참고
- (졸업제 제도 미적용) 본 사업은 졸업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임
- (3책5공 제도 적용)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
 -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,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
 - * (3책5공 제도)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)
- (보안등급 분류)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 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
 -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 - 보안과제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
 -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,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(보안과제 ↔ 일반과제)

-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1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44조부터 제48조, 「중소기업기술 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」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
 - * 신청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
-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<별첨3> 참고

4. 연구개발비 산정기준

- (기존 인력 인건비)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,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% 초과 불가
 - * 단, 「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」 9.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.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
- (신규채용 인건비)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* 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
 - *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 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
- (위탁연구개발비)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(현물포함)에서 위탁연구 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% 이내 계상 가능
- (연구수당)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
 - * 연구수당 계상 한도 : 연구개발기관 인건비 합(현금·현물 인건비, 학생인건비, 미지급 인건비 포함(단,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))의 20% 이내 계상 가능
 - **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
- (외부 전문기술 활용비) 기술도입비, 전문가활용비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(현물포함)의 40% 범위에서 계상 가능

- (연구실운영비)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*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·계획(붙임2)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
 - * 사무용 기기, 사무용 소프트웨어, 연구실 환경유지기기 관련 비용(사무용품은 제외)

- (간접비)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(현물, 위탁 연구개발비, 연구개발부담비 제외)의 10% 이내로 계상 가능
 - * 간접비 고시 비율,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

-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
 - * 예시) 1.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,
2.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영리기관 A가 7억원,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,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
 -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(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),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을 100%를 유지
 - *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. 단,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을 50%씩 동시 참가는 가능
 - **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을 총합 100%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
 - (신규채용 시점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
 - *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(다만,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(1년 이상 고용 유지) 완료)
 - **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,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(다만,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(1년 이상 고용 유지) 완료)
 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(정규직)
 - *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(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,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)

◦ 실적점검

- (협약 시)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

*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

- (위반 시)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 금액 전액(既 지급 인건비 포함)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

*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,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

□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

◦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, 기관부담연구 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

* 사업신청 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,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

** 예시)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

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

*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(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,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)

- (적용대상)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

-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,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

*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

**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

- 신규채용 기준

| 구 분 | 기 준 |
|------|--|
| 신규과제 |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|
| 계속과제 |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|
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 포함 인건비
- (현금부담 감액 범위)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
 - *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
- 실적점검
 - (협약 시)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
 - *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
 - (요건 미충족 시)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

5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연구개발계획서 신청·접수기간

☞ 접수창구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

◦ 신청·접수기간 : 2025년 8월 8일(금) ~ 8월 22일(금), 18:00까지

<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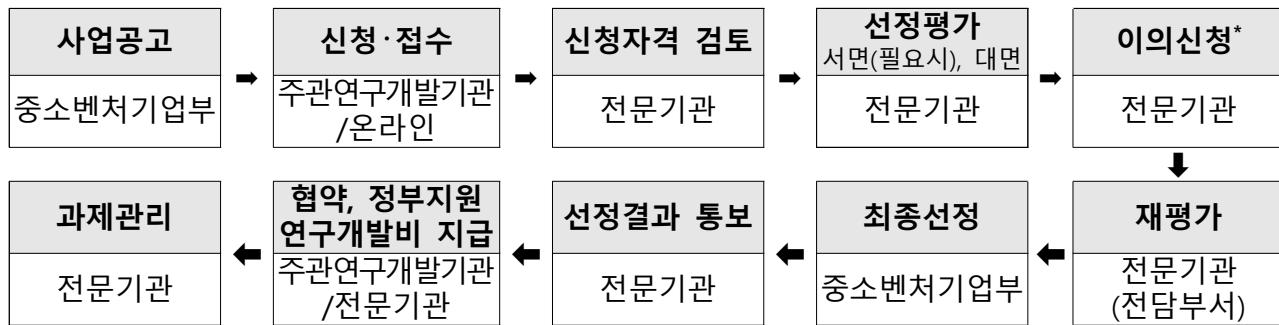
- ☞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
-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
- ☞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·접수에 유의하기 바람
 - * 18시 이후, 신청 및 제출,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
- ☞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:00 까지만 가능

□ (신청방법 및 구비서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활용

- ◇ **신청방법** : www.iris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* → QUICK LINK → R&D업무포털 → 과제접수 → 신청공고 목록에서 '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' 검색 후 시스템 내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
 - *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이 필요하며, 기관대표자 및 과제참여자는 '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- 연구자정보 전환동의'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
- ◇ **신청서류** :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확인
 - www.iris.go.kr → 사업정보 → 사업공지 → 사업공고 → 2025년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 - * 지원분야 내용을 확인하고 세부품목 중 선택하여 신청
- ◇ 온라인 시스템 작성 후 '최종확인'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 → 오류 발생시 해당 안내에 따라 수정가능하며, 이후 '최종확인' → '제출'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(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)

6.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

☞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

*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

**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,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

□ 서면평가(필요 시)

-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,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·사업성 중심으로 평가

$$\text{서면평가 평점} = \frac{\text{서면평가 점수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$$

□ 사전검토

-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

□ 선정(대면)평가

-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,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$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선정평가 점수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* 가·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<참고> 참조

< 평가지표 주요내용 >

| 구분 | 평가지표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
| 기술성 (40) | · 기술개발 목표, 내용의 수준, 구체성 및 정부지원필요성 | 15 |
| | ·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, 개발기간, 결과의 검증 방법 및 계획의 적정성 | 20 |
| | · R&D의 기술적 파급효과 | 5 |
| 사업성 (20) | ·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와 전략, 방법, 일정, 변수 대응의 적정성과 기대 효과의 실현 가능성 | 10 |
| | · R&D의 경제적 파급효과 | 10 |
| 기술개발 부합성 (10) | · 산재예방 안전장비 및 솔루션 보급계획의 적정성 | 5 |
| | · 기술개발 결과물의 산재예방 효과 및 산재발생 감소효과 구체성 | 5 |
| 기술개발 보유역량 수준 (25) | ·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(연구팀 구성 계획,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의 역량 및 수행 역할 등) | 15 |
| | · 본 과제 수행 관련 특허, 논문 등 기술적 기반 | |
| | · 연구윤리(연구개발비 부정사용, 표절 등 연구부정에 따른 참여제한 이력 등) | 10 |
| 자금집행계획 (5) | ·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| 5 |
| | 합계 | 100 |

□ 지원과제 확정

- 선정(대면)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□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

-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

과제신청 시 제출서류

- ☞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,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
- *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

| 연번 | 서식명 | 제출서류 | |
|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|
| | | 필수 | 해당시 |
| ① |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*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'25. 10. 1로 기재 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 ** (본문1) 20페이지 이내 작성,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<u>[붙임]</u> 1.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.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·관리 계획 3.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<u>지정시 의무 확인서</u> *** (본문2)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| 본문1 본문2 | O O |
| ② | 중소기업 확인서 | | O |
| ③ | (도입기업)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*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| | O |
| ④ | (도입기업) 공장등록증명서 | | O |
| ⑤ | 공급기업-도입기업 간 컨소시엄 확약서 | | O |
| ⑥ | 신용상태 조회·정보활용 동의서 | | O |
| ⑦ |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| | O |
| ⑧ |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(3책5공) 기준 준수 확약서 | | O |
| ⑨ |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*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. 단,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| | O |
| ⑩ |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*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('24년도)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를 제출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('23년도)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 제출 | | O |
| ⑪ | 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 | | O |
| ⑫ |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| | O |
| ⑬ |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*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(확정)한 자료에 한하여 인정(추가 제출 불가) | | O |

7. 기술료 징수기준

□ R&D 기술료 징수기준

- (납부대상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
- (납부방식)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 기관에 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
☞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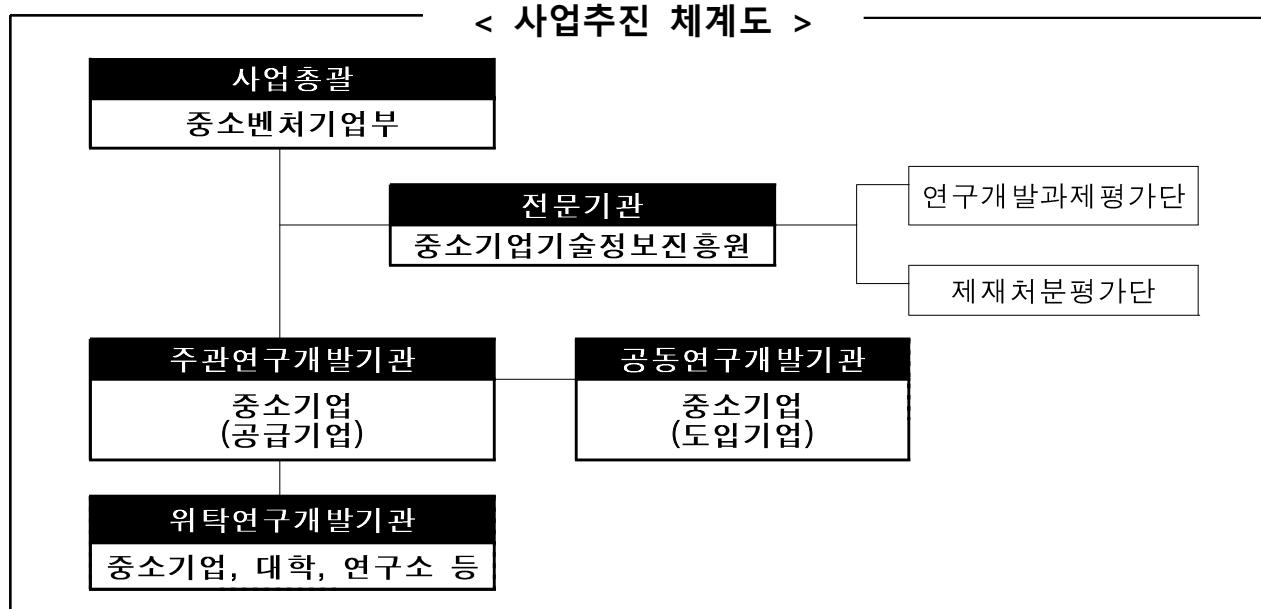
-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
-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 - * 시스템사용 : [>>알림고객>>자료실>>IRIS사용메뉴얼>>온라인메뉴얼>>"기술료" 검색>>R&D업무포털 "사후관리\(기술료\)메뉴얼"](http://www.iris.go.kr) 참고
 - * 법령확인: [>>알림고객>>자료실>>국가R&D법령.지침>>"중소벤처기업부", "기술료" 검색>> "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"](http://www.iris.go.kr) 참고
- ③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(도입기업)은 기술료 면제

8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
-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-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
-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
 - 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

□ 추진체계



* 대학,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(참여 권장)

9. 문의처

□ 사업안내

| 담당기관(부서) | | 문의사항 | 연락처(이메일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(기술혁신정책과) | 시행계획 공고 |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|
| 전문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창업성장사업실) | 신청·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 | IRIS 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 |
| 시스템 | IRIS 운영단 |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한 신청·접수,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| |

☞ 관련 웹사이트
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: <http://www.iris.go.kr>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_llfqd

참고**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(증빙서류)****□ 가 · 감점**

- (가점)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대사항별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.(단,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 항목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)

<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>

| 분야 | 우대사항 | 가점 | 확인방법 (증빙서류) |
|------------|--|----|--|
| 성과창출 강화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기업 | 1점 | 최종평가확인서 등 |
|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* 최종평가 결과 '우수'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| 1점 | 최종평가확인서 등 |
|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* 중소기업R&D우수성과 50선에 선정 되었으나,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여 장관 포상을 받지 않은 기업 포함 | 2점 | * 표창장 등 *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&D 우수 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 |
| |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| 2점 | 표창장 등 |
| |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이 신청한 과제 * 조기완납 기준: 기술료 납부 1~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** 단,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| 1점 | 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 |
| 생태계 보완 |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| 1점 | 「여성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|
| |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| 1점 |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(장애인등록증 확인 필) |
| |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| 1점 |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|
| |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기업종 관련 기업 *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및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| 1점 |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|
| |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과제 수행 종료 후, 기술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| 1점 | 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 2에 따른 기술자료임차증 |

* '중소기업R&D우수성과 50선'에 선정된 기업은 상기 가점 외에 선정평가시 "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지표"점수를 최고점으로 부여함(단, 선행연구와 중복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)

<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>

| 연번 | 가점 사항 | 가점 | 확인 |
|----|---|----|--|
| ① |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(INNO-BIZ) | 1점 |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인증서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② |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MAIN-BIZ) | 1점 |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(MAIN-BIZ)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③ |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| 1점 | 벤처기업 인증서 (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) |
| ④ | 마이스터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(계약 학과, 기술사관, 취업맞춤반)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| 1점 |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|

- (감점)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<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감점 >

| 연번 | 감점 사항 | 감점 | 확인 |
|----|---|-----|---------|
| ① |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| 10점 | 전문기관 확인 |
| ② |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*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* 정당한 사유 : 1.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, 2.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| 1점 | |

- (유의사항)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.